

근태불량해고...法 “사측과 의견대립 있다면 고려해야, 부당”

사측과 오랜 기간 의견 대립에 우울증 찾은 지각, 연차휴가...대표와 말다툼도 法 “전적으로 근로자 책임 아냐” 패소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사측과의 오랜 의견 대립 등 그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A사가 중

양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제 심판청구소 소송에서 지난 1월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대표이사 C씨와 고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근로계약 내용에 이견이 생긴 후로 장

기간 감정적 대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보다 많은 날짜의 휴가를 사용하거나 관계사 교육을 거부하고, C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폭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사는 2020년 5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B씨는 미승인 출장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영수증 제출, 지시불이행,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을 이유로 입사한 지 4년여 만인 같은 해 6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

원회에 재심을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지적한 미승인 출장, 지시불이행, 과도한 휴가 사용, 교육 거부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B씨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그 근거로 ▲B씨가 미승인 출장을 간 것은 업무상절차 위반에 불과하고 관행대로 비용처리를 한 점 ▲지시불이행이 1회성에 그친 점 ▲통근거리가 먼 B씨 지각을 A사가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문제된 B

씨의 발언은 개인적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B씨는 오랫동안 근로계약 내용과 관련한 이견으로 C씨와 감정 대립이 있었고, 2020년 1월에는 기존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며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전적으로 B씨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사 초창기부터 기여해 왔고, 2020년 이전에는 이 사건 해고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어 이 같은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이슬기자



한반도 상생·자주·평화를 위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동령실 인근에서 한반도·동북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 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업비 무단전용’ 광주시관광협회 직원 송치

업무상횡령 혐의...공모자도 송치

광주시 관광협회가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 목적으로 어긋나게 협회 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 목적이 아닌 운영 경상비로 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주시관광협회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 연관된 협회 소속이 아닌 1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혐의를 받던 다른

협회 직원 1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A씨 등은 최근 광주시가 시 관광협회에 지원한 위탁 사업비를 허위 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5억여 원을 빼돌린 뒤 협회 운영비, 다른 위탁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는 시 관광협회가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 행사 개최 비용 등 9개 위탁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유용·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관련자와 협회 공금 계좌 내역 등을 살펴, 위탁 사업비가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협회가 최근 퇴직된 관련 소송 등에

패소하면서 운영상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빼돌린 사업비를 다른 위탁 사업 경영 등에 운용한 것으로 봤다. 민간위탁 사업 항목마다 지원하는 사업비인 만큼, 용처가 정해져 있지만 급한 대로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것이다.
경찰은 횡령액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 목적의 유용 또는 횡령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만 쓰도록 용처가 제한돼 있는 만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검찰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슬비기자

“MZ세대, 다르네요”...축의금 9만9000원의 진실은?

“후배에게 맡겼더니 수수료 제외하고 전해줘”

후배에게 축의금 전달을 부탁했다가 곤경에 처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다.
작년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와, MZ세대 다르긴 다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직장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하게 돼서 참석하는 다른 후배에게 10만원을 송금해 대신 축의금을 내달라고 했다”며 “결혼한 후배가 연락이 와서 많이 보내줘서 감사한데 9만9000원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고 썼다.
작성자는 “대신 축의금 낸 후배에게 물어보니 ATM 수수료가 1000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9만9000원을 냈다고 한다. 1000원

더 송금해달라고 했으면 보내줬을 텐데”라고 토로했다.
이어 “ATM에서는 분명 10만원이 뺏혔을 텐데 어디서 또 9000원을 바꾸어 낸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이른바 ‘MZ세대’ 논란과 함께 뒤늦게 화제가 됐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며 기존과 다른 이색적인 사고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네티즌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요청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 “1000원 정도면 큰 금액도 아닌데 굳이 제외하고 전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나라면 나중에 커피 한잔 사라는 식으로 넘어갔을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세대 전체의 특징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당사자의 사고방식이나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모든 MZ세대가 그렇지는 않다”, “진짜 MZ세대들은 직접 전달하는 대신 계좌이체로 전달하지 않을까”, “개인 사레인데 지 나친 일반화가 아닌가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